#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63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 권성동·추경호·김희국

윤한홍 • 구자근 • 박덕흠

이 용・최춘식・유상범

한기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면제 등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증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단체급식 중단 등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을 때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 한 연장(안 제69조의3)
- 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1조)
-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 장(안 제87조의2)
- 라.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 마.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6조제2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0년 12월 31일</u> 까	<u>2023년 12월 31일</u>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 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 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u>20</u>
23년 12월 31일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략)
- ② ~ ⑧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중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23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1. ~ 5. (현생과 실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4) ① (十/// / / / · · · · · · · · · · · · · · ·
多) ①

고,	제5호	및 :	제6호는	<u>2020년</u>	1
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소	]만 적	용한	다.		

- 1. ~ 6. (생략)
-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저

-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다.
- 1. ~ 21. (생략)
- ③ ~ ⑤ (생 략)

<u>2023년 1</u>
<u> 2월 31일</u>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23년 12월</u>
<u>31일</u>
1. ~ 2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